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160호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공고제2006-023호 : 2006. 10. 2)에 따라 신청기관심의결과지정요건에 적합하여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9일  
기술표준원장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지정분야 또는 품목
제2007-001호	(재)한국전자재 시험연구원 (김선호)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3동1465-4번지 (02)3415-8817	토건(F)- 아스팔트/콘크리트 토건(F)- 콘크리트 토건(F)- 지반분야
제2007-002호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이화석)	경기도군포시금정동 692-8 (031)428-7516	전기(C)- 조명 전기(C)- 가정용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007-003호	한국가스석유 기기협회 (함희인)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장상동535-4 (031)480-2985	기계(B)- 난방기구 기계(B)- 가스/오일연소기기
제2007-004호	(주)대한전기협회 (이원길)	서울특별시중구 수표동11-4 (02)6328-6115	전기(C)- 전력 제어시스템 (원자력발전전기설비)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395호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 제3항에규정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안전기준(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3호, 2007. 1. 24)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기술표준원장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해로개편하여시행하면서도출된안전과직접관련이없는기준내용을보완하여업계에어로사항을신속히해소하고자함

### 2. 주요골자

-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에 대한내압시험조건과 승차용안전모의돌출물이탈시험에대한시험조건을 명확히함
- 유모차는 일본및 유럽규격을반영하여정지장치의부착위치요건을완화하고, 유아용침대를높이사항과 사용상주의사항요구를통일

### 3. 의견제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안전인증기준중부속서3「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부속서11「승차용안전모」부속서14「유모차」부속서15「유아용침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 칙(제2007-39호, 2007. 7. 20)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 유모차 신·구 대비표(안전인증부속4)

현행	개정안	비고
<p>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 판을 적용한다.</p> <p>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 KS K 0611 섬유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 방법: 증류수 추출법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 방법: 카본아크법 KS K 0218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 방법: 크세논아크법 KS K 0430 세탁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A-1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p> <p>&lt; 신설 &gt; &lt; 신설 &gt;</p>	<p>2. 관련규격</p> <p>----- ----- ----- -----</p> <p>&lt; 삭제 &gt; &lt; 삭제 &gt; &lt; 삭제 &gt;</p> <p>KS M 6518 ----- KS K ISO 105-B02 섬유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제B02부: 인공광에 대한 염색 견뢰도: 크세논아크법 KS K ISO 105-C01 섬유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제C01부: 세탁 견뢰도 시험 방법</p>	<p>KS 변경 내용 반영</p>
<p>4.2.2 일광 견뢰도 포지로서 사용되는 재료의 일광 견뢰도 등급이상이어야 한다.</p>	<p>4.2.2 일광 견뢰도 ----- 4급 이상 -----</p>	<p>KS 변경 내용 반영</p>
<p>4.3.6 정지장치(Stopper) 유모차의 스톱퍼는 손을 떼지 않고 스톱퍼를 발로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p>	<p>4.3.6 정지장치(Stopper) 바퀴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스톱퍼가 있어야 한다. 스톱퍼의 조작부는 아이가 유모차 안에서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아이가 조작할 수 없는 곳에 있어야 하며 조작자(손을 떼지 않고 스톱퍼를 발 등으로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p>	<p>일본 (CPSA 0001), 유럽규격 (EN1088) 반영</p>
<p>5. 시험 방법 5.1 일반요건 육안 또는 촉감으로 확인한다 5.2 재료 5.2.1 파열 강도 무렌 저압형 파열 강도 시험기로 확인한다. 5.2.2 일광 견뢰도 시험은 KS K 0700 또는 KS K 0218에 따른다 5.2.3 염색 견뢰도 시험은 시험은 KS K 0430(A-1법)에 따른다.</p>	<p>5. 시험 방법</p> <p>----- ----- ----- -----</p> <p>5.2.2 일광 견뢰도... KS K ISO 105-B02에 따르 되 노출 조건은 미주 지역에서 선호하는 조건으로 하고 조광법은 방법으로 한다. 방사 에너지 수준은 300~400nm에서 1728 kl/m<sup>2</sup> 또는 420nm에서 43 kl/m<sup>2</sup>로 한다 5.2.3 염색 견뢰도... KS K ISO 105-C01 -----</p>	<p>KS 변경 내용 반영</p>

□ 유아용침대신· 구대비표(안전인증부속서15)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부 등받이 조절 요람 및 간이침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p> <p>6.3 제품의포장에는다음사항을보기 쉽고 영구적으로표시하여야한다.</p> <p>a) 사용가능한유아의몸무게나나이에관한 최소한의정보</p> <p>b) 적정인원수와사용기간</p> <p>c) 등받이조절요람은다음의경고문구표시되어있어야한다.</p> <p>△경고: 스스로앞을수있는유아에게는<b>사용하지말 것(약6개월에서)9kg 까지</b></p>	<p>제2부 등받이 조절 요람 및 간이침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p> <p>6.3 -----</p> <p>-----문구수정</p> <p>----- (유럽규격</p> <p>----- EN</p> <p>-----12790</p> <p>-----참조)</p> <p>-----</p> <p>△경고: -----<b>사용하지말 것”(약6개월 또는9kg 까지의유아에게만사용가능</b></p>	
<p>6.4 사용 설명서 올바르게안전한조립및 조절요람의사용에관한설명서가제공 되어야한다.</p> <p>이설명서는다음의표제를달아야한다.</p> <p>경고·장래의참고를위하여보관할것</p> <p>설명서는다음사항을포함해야한다.</p> <p>a) 유지장치를항상사용할것</p> <p>b) 제품의유지관리및 세척과세탁에대한 설명서</p> <p>등받이조절요람은추가로다음사항을포함해야한다.</p> <p>a) 스스로앞을수 있는유아에게<b>는권하지 말 것”(약6개월에서)9kg 까지</b></p>	<p>6.4 사용 설명서</p> <p>-----</p> <p>-----</p> <p>-----</p> <p>-----문구수정</p> <p>----- (유럽규격</p> <p>----- EN</p> <p>-----12790</p> <p>-----참조)</p> <p>a) ----- <b>사용하지말 것”(약6개월또는9kg 까지의유아에게만사용가능)</b></p>	

기술표준원고시제 2007 -24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p>제10조(신개발품의 안전기준 적용) ① 신개발품으로 당해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개별 안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있다.</p> <p>1. ~ 3. (생략)</p> <p>4. &lt;신설&gt;</p> <p>② (생략)</p>	<p>제10조(신개발품 등의 안전기준 적용) ① 신개발품 등으로</p> <p>-----</p> <p>-----</p> <p>-----</p> <p>1. ~ 3. (현행과 동일)</p> <p>4. <u>특히 제품 신기술 인증 제품 특수 구조 용품 등으로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u></p> <p>② (현행과 동일)</p>

###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항목에 대한 추가 경과조치) 이 고시 K 60884-1의 14.26항(과부하보호장치 부착)은 이동형 콘센트 및 구멍 3구에 대해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취지

- ① 적용할수 있는 국제기준등이 없는 신개발품등에 대한 인증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진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
- ② 이동형콘센트에 대한 과부하보호장치 부착을 한국산업규격(KS C 8305) 과일치시켜 4구 이상에 대하여만 시행하고, 2구 및 3구에 대하여 적용시기를 연연기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① 특허제품, 신기술인증제품, 특수구조 등등에 대해 전문위원회 의심의를 거친 기준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함
- ②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 K 60884-1(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14.26항(과부하보호장치 부착)의 이동형콘센트 2구 및 3구에 대해 적용시기를 연연하여 2008. 7. 1부터 적용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45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35호, 2007. 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취지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통해 개편하여 시행하면서도 출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내용을 보완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행 '운동화' 등의 표시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등으로 개별 표시를 하여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사용상(피부접촉등) 불편하다면, 개별 표시를 생략할도록 완화
- 현행 '가죽의류'는 표시는 제품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개별 표시(박음질 등)를 하여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섬유류의류 표시와 동일하게, 포장(또는 꼬리표, 스티커등) 표시로도 선택하도록 완화
- 선글라스' 안전테는 개정(안)에서 코다리의 길이 및 재질의 표시를 생략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제조국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에 따라 제품에 표시토록 변경

3. 안전· 품질 표시 대상 공산품의 표시 기준' 개정 내용

'안전· 품질 표시 대상 공산품 표시 기준' 중부속서1「가정용 섬유 제품」부속서2「화학제품분야」 및 부속서3「생활용품분야」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제2007-45호, 2007. 8.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행한다.

가. 안전· 품질 표시 부속서1 가정용 섬유 제품(관보 게재 배용 생략)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류(의의류, 중의류, 내의류, 학생복, 한복) 및 밖의 섬유 제품(이불 및 요, 모포, 침낭, 카페트, 모자, 장갑, 양말, 기저귀, 수의, 가발,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숄, 넥타이, 모기장, 덮개, 가방, 턱받이, 끈, 운동화)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맞춤복은 안전· 품질 표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적용범위 ..... ---(이불 및 요, 방석류, 쿠션류, ..... ..... 커튼류, .....	방석류, 쿠션류 추가, 자구수정
4.1.1 개별 제품에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별표1]에 따라 섬유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 소비자 상담실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및 제조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또한, 제조년월,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4.1.1 ..... ..... 다만 ' 소비자 상담실 표시는 소비자 상담실이 없을 경우 제품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문의처' 제조자명(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소비자 상담실 표시요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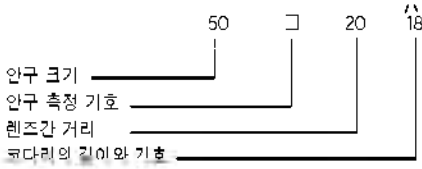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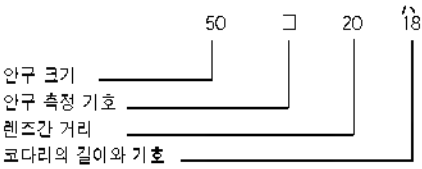


나. 안전· 품질표시부속서2 화학제품분(완보게제사내용 생략)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별표 1] 1. 가죽 제품 가. ~마 (생략) <u>&lt;신설&gt;</u></p>	<p>[별표 1] 1. 가죽 제품 가. ~마 (현행과같음) 사. <u>가죽의류의표시는상기의규정에도불구하고 「안전· 품질표시부속서1」 가정용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따라 표시할수 있다. 다만 섬유조직또는 혼용율의표시는섬유부분에 한하며 가죽원단의표시와사용상주의사항은 해당사항이있을 경우가죽제품의표시규정에따른다</u></p>	<p>가죽의류 표시방법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기준 적용</p>
<p>주 1. (생략) 2. <u>사용상 주의사항</u> <u>&lt;신설&gt;</u></p>	<p>주 1. (현행과같음) 2. <u>사용상주의사항취급상주의 사항으로표시할수 있다</u> ○ <u>사용상주의사항은제품의특성에따라다음 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사항이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제품특성에 따라사용상주의사항을추가할수 있다</u></p>	<p>사용상 주의 사항 표시 명확화</p>
<p>5. 화장지 가. 품명 (생략)</p>	<p>5. 화장지 가. 품명 (현행과같음)</p>	
<p>나. 치수 및 매수 (1) 화장실용화장지의치수표시는&lt;표&gt;에 따라종이나비및 길이를표시하고그 옆에 (겹)을 표시하여야한다. <u>&lt;단서신설</u> (2) (생략)</p>	<p>나. 치수 및 매수 (1) .....형태에 ..... 다만, 제품의형태에따라 다른 표시 미용 화장지의표시 기준을적용하여표시할 수있다. (2) (현행과같음)</p>	<p>다른 표시 방법 추가</p>
<p>라. 표시는최소판매단위마다포장지에소비가보기 쉬운 곳에 화장실용화장지는&lt;형식1&gt;, 미용 화장지는&lt;형식2&gt;에 따라표시하여야한다. 여러개로함께포장할때에는치수또는매수다음에포장된 수량을 ( )개로표시하여야한다.</p>	<p>라. 표시 ..... .....제품의형태에따라&lt;형식 1&gt; 또는&lt;형식 2&gt;.....</p>	<p>화장지 매수표시 방법보완</p>

다. 안전· 품질표시속서3 생활용품분야 (관보게재시내용생략)

현행	개정안	비고
<p>[별표 1] 2. 가정용 공구 2.1 플라이어 가. (생략) 나. 모양 및 치수 플라이어의모양및 치수는다음과같다&lt;단서신설 다~라. (생략)</p>	<p>[별표 1] 2. 가정용 공구 2.1 플라이어 가. (현행과같음) 나. 모양 및 치수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다~라. (현행과같음)</p>	<p>치수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p>
<p>2.2 렌치 가. (생략) 나. 모양 및 치수 렌치의모양및 치수는 다음과같다&lt;단서신설 다~라. (생략)</p>	<p>2.2 렌치 가. (현행과같음) 나. 모양 및 치수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다~라. (현행과같음)</p>	<p>치수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p>
<p>2.3 멍키 렌치 가~나. (생략) 다. 모양 및 치수 렌치의모양과치수는 다음에따른다&lt;단서신설 라. (생략)</p>	<p>2.3 멍키 렌치 가~나. (현행과같음) 다. 모양 및 치수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라. (현행과같음)</p>	<p>치수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p>
<p>2.4 파이프렌치 가~나. (생략) 다. 모양 및 치수 파이프렌치의모양·치 수는다음에따른다&lt;단서신설 라. (생략)</p>	<p>2.4 파이프렌치 가~나. (현행과같음) 다. 모양 및 치수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라. (현행과같음)</p>	<p>치수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p>
<p>2.5 니퍼 가~나. (생략) 다. 모양 및 치수 니퍼의모양및 치수는 다음과같다&lt;단서신설 라. (생략)</p>	<p>2.5 니퍼 가~나. (현행과같음) 다. 모양 및 치수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라. (현행과같음)</p>	<p>치수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p>
<p>2.6 스패너 가~나. (생략) 다. 모양, 호칭 및 강도 스패너의모양, 호칭, 강도는KS B 3005에 따르며, 맞변 거리의허용차는KS B 1001을 참조한다&lt; 단서신설 라. (생략)</p>	<p>2.6 스패너 가~나. (현행과같음) 다. 모양, 호칭 및 강도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라. (현행과같음)</p>	<p>호칭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6 선글라스 가. 선글라스제품마다안구크기, 안구측정 기호등 표1에 나타낸표시사항을정해진 위치에표시해야한다. 다만, 제조자또는 판매자의약호, 모델기호색상기호는표 시하지않아도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1 안경테의표시</p> <table border="1" data-bbox="204 651 647 913"> <tr><td>표시 사항</td><td>위치</td></tr> <tr><td>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약호</td><td>규정하지 않음</td></tr> <tr><td>&lt; 신 설 &gt;</td><td>&lt; 신 설 &gt;</td></tr> <tr><td>모델 기호</td><td>규정하지 않음</td></tr> <tr><td>색상 기호</td><td>규정하지 않음</td></tr> <tr><td>안구 크기(안구 측정 기호 2와 함께)</td><td>몸체</td></tr> <tr><td>렌즈간 거리</td><td>몸체</td></tr> <tr><td>코다리의 길이(하의 7 호와 함께)</td><td>몸체</td></tr> <tr><td>다리의 길이</td><td>다리</td></tr> <tr><td>재질 표시<sup>(1)</sup></td><td>적합한 위치에</td></tr> </table> <p>주 &lt; 신 설 &gt;</p> <p>(1) 제조자와 공급자가 재질 표시를 할 때는 약호 및 기호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비 고 사용되는 모든 치수는 KS G ISO 8624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바람직한 표시 순서의 예:</p> 	표시 사항	위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약호	규정하지 않음	< 신 설 >	< 신 설 >	모델 기호	규정하지 않음	색상 기호	규정하지 않음	안구 크기(안구 측정 기호 2와 함께)	몸체	렌즈간 거리	몸체	코다리의 길이(하의 7 호와 함께)	몸체	다리의 길이	다리	재질 표시 <sup>(1)</sup>	적합한 위치에	<p>6 선글라스 가. .... ..... 다만, 제조자또는 판매자 의 약호, 모델기호색상기호코다리의길이 이 재질표시는표시하지않아도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1 선글라스의표시</p> <table border="1" data-bbox="699 651 1142 913">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제조국명<sup>(1)</sup>(수입품에 한함)</td><td>몸체</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코다리의 길이(하의 7 호와 함께)</td><td>규정하지 않음</td></tr> <tr><td>.....</td><td>.....</td></tr> <tr><td>재질 표시<sup>(1)</sup></td><td>규정하지 않음</td></tr> </table> <p>주(1) 안경테 생산국과 선글라스 조립국이 다르다면 안경테 생산국 및 선글라스 조립국 모두 표시해야 한다. (2) .....</p> <p style="text-align: center;">바람직한 표시 순서의 예:</p> 	.....	.....	.....	.....	제조국명 <sup>(1)</sup> (수입품에 한함)	몸체	.....	.....	.....	.....	.....	.....	코다리의 길이(하의 7 호와 함께)	규정하지 않음	.....	.....	재질 표시 <sup>(1)</sup>	규정하지 않음	<p>○자구수정 ○코다리의 길이, 재질표시 선택사항 으로 변경 ○수입품의 제조국명 표시는 「대외 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규정을 따르도록 변경</p>
표시 사항	위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약호	규정하지 않음																																							
< 신 설 >	< 신 설 >																																							
모델 기호	규정하지 않음																																							
색상 기호	규정하지 않음																																							
안구 크기(안구 측정 기호 2와 함께)	몸체																																							
렌즈간 거리	몸체																																							
코다리의 길이(하의 7 호와 함께)	몸체																																							
다리의 길이	다리																																							
재질 표시 <sup>(1)</sup>	적합한 위치에																																							
.....	.....																																							
.....	.....																																							
제조국명 <sup>(1)</sup> (수입품에 한함)	몸체																																							
.....	.....																																							
.....	.....																																							
.....	.....																																							
코다리의 길이(하의 7 호와 함께)	규정하지 않음																																							
.....	.....																																							
재질 표시 <sup>(1)</sup>	규정하지 않음																																							
<p>다. 날개포장또는꼬리표에는다음의형식 에 따라보기쉬운곳에알아보기쉽게인 쇄하거나고리가떨어지지않도록표시하 여야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210 1464 657 1727"> <tr><th colspan="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th></tr> <tr><td>1. 종 류 (보기: 플라스틱 안경테)</td><td></td></tr> <tr><td>2. 재 질</td><td>— 테 — 렌즈</td></tr> <tr><td>3. 광선차단율 특성 - 자외선 및 가시광선 투과율</td><td></td></tr> <tr><td>4. 제조년월</td><td></td></tr> <tr><td>5. 제조자명</td><td></td></tr> <tr><td>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td><td></td></tr> <tr><td>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td><td></td></tr> <tr><td>8. 제조국명</td><td></td></tr> </table>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종 류 (보기: 플라스틱 안경테)		2. 재 질	— 테 — 렌즈	3. 광선차단율 특성 - 자외선 및 가시광선 투과율		4. 제조년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8. 제조국명		<p>다. .... .....</p> <table border="1" data-bbox="689 1464 1136 1727"> <tr><td>1. ....</td></tr> <tr><td>2. ....</td></tr> <tr><td>3. 광선 특성 — 자외선 차단율 — 가시광선 투과율</td></tr> <tr><td>.....</td></tr> <tr><td>.....</td></tr> <tr><td>.....</td></tr> </table>	1. ....	2. ....	3. 광선 특성 — 자외선 차단율 — 가시광선 투과율	.....	.....	.....	<p>자구수정</p>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종 류 (보기: 플라스틱 안경테)																																								
2. 재 질	— 테 — 렌즈																																							
3. 광선차단율 특성 - 자외선 및 가시광선 투과율																																								
4. 제조년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8. 제조국명																																								
1. ....																																								
2. ....																																								
3. 광선 특성 — 자외선 차단율 — 가시광선 투과율																																								
.....																																								
.....																																								
.....																																								

7. 안경테

가. 안경테제품마다안구크기, 안구측정 기호등 표 1에 나타낸표시사항을정해진 위치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조자또는 판매자의약호, 모델기호,색상기호는 표시하지않아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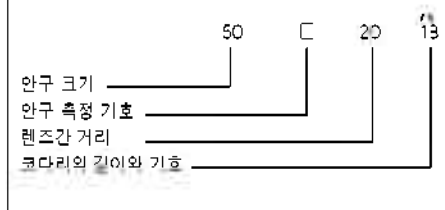
표1 안경테의표시

표시 사항	위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약호	규정하지 않음
< 신 설 >	< 신 설 >
모델 기호	규정하지 않음
색상 기호	규정하지 않음
안구 크기(안구 측정 기호(20, 50, 60))	몸체
렌즈간 거리	몸체
코다리의 길이(1, 2 의 기호와 함께)	몸체
다리의 길이	다리
재질 표시(1)	적합한 위치에

주(1) 제조자와 공급자가 재질 표시를 할 때는 약호 및 기호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비 고 사용되는 모든 치수는 KS G ISO 8624에 따른다.

바람직한 표시 순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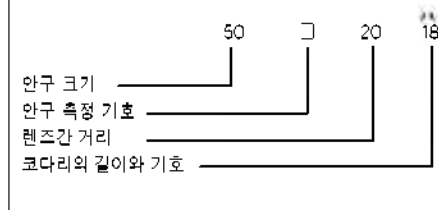
7. 안경테

가. ....  
..... 다만, 제조자또는 판매자의약호, 모델기호,색상기호코다리의길이 재질표시는 표시하지않아도된다.

표1 안경테의표시

.....	.....
.....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몸체
.....	.....
.....	.....
.....	.....
코다리의 길이(1, 2 의 기호와 함께)	규정하지 않음
.....	.....
재질 표시(1)	규정하지 않음

바람직한 표시 순서의 예:



○ 코다리의 길이, 재질표시 선택사항으로 변경  
○ 수입품의 제조국명 표시는 「대의 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규정을 따르도록 변경